

#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8-233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10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가로수의 식재와 관리 업무의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기관에 나무병원을 추가하고, 도로법 개정에 따라 훼손자 관련 비용부담 내용 정비 등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「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·관리에 관한 조례」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## 주요내용

- 가. 가로수의 식재와 관리 업무의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기관에 나무병원 추가(안 제18조)
- 나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한 명칭사용(안 제19조)
- 다. 도로법 개정으로 가로수 훼손자 관련 비용부담 내용 정비(안 제20조, 제21조, 제22조)
- 라. 교통사고에 의한 가로수 예치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납 가능 명시(별표 2)

## 개정조례안 : 붙임1

##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## 관계법령발취서 : 붙임3

- 「산림보호법」 제2조, 제21조의9
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」 제21조
- 「도로법」 제1조, 제2조
-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

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 없음

## 예산수반사항 : 해당 없음(붙임 4)

## 사전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9. 8. 14. ~ 2019. 9. 3.(초일 미산입 20일)

## 기타 참고사항 : 붙임5,6

- 현행조례
- 방침결정문(시장)

< 붙임 1 >

##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산림조합중앙회”를 “산림조합중앙회, 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9에 따른 나무병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3조에 따른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은 「산림조합법」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, 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9에 따른 나무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9조를 삭제하고, 제20조를 제19조로 하며,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20조**(훼손자의 배상책임 등) ① 가로수 및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관리청은 배상금을 산정하여 훼손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에게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. 이 경우 시장은 가로수의 하자 등을 고려하여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예치금으로 2년 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고, 훼손자는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예치금의 반환을 신청하며, 시장은 「안산시 재무회계규칙」 제80조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

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배상 책임이 있는 자가 배상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배상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2와 같다.

제19조(중전의 제20조)의 제목 “(원인자부담금 등)”을 (원인자 비용부담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원인자부담금”을 “원인자 비용부담”으로 한다.

제21조를 삭제한다.

제22조제4항제4호 중 “훼손부담금을 부과”를 “훼손자에게 배상금을 청

구” 로 한다.

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녹지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녹지과장 허진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도시숲조성팀장 서병구
	담당자 성명·전화	공성경 (행정 2346)

[별표 2]

원인자 비용부담·훼손자 배상금 등의 산정기준(제19조, 제20조 관련)

원인자 비용부담 등	<p>1. 이식을 원하는 경우</p> <p>가.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: 예치금 = 도급공사비</p> <p>나.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: 비용부담 = 도급공사비 + 이식비                  ※ 이식비 : 상용인부 활용시 인부임에 준함</p> <p>2. 제거하는 경우</p> <p>가.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: 비용부담 = 도급공사비</p> <p>나.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: 비용부담 = 도급공사비 + 제거비                  ※ 제거비 : 상용인부 활용시 인부임에 준함</p>
훼손자 배상금 등	<p>1. 벌채, 수간절단 등으로 조경수 가치가 없는 경우                  : 배상금 = 도급공사비                  ※ 원인자가 원상복구 하는 경우 : 예치금 = 도급공사비</p> <p>2.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                : 배상금 = 수목비의 20% + 보호시설재료비 및 작업비                  ※ 강도의 가지치기 : 수관의 1/3 이상                  ※ 작업비 : 상용인부 활용시 인부임에 준함</p> <p>3. 약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: 배상금 = 수목비의 10% + 작업비</p>
<p>※ 비 고</p> <p>도 급 공 사 비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 10조에 의한 원가계산(수목 등 재료비포함)적용하여 설계된 공사비</p> <p>수 목 비 : 가격정보지(조달청) 가격적용,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시가 적용</p> <p>예치금납부방법 : 금액이 500만원 이상 일때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.                  단, 훼손자가 교통사고로 훼손된 가로수를 원상복구한 경우 제 20조 제2항의 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</p> <p>예치금예치기간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하자책임담보 기간동안 예치</p> <p>예치금환불 등 : 예치기간이 경과한 후 이식목에 대한 조경수로서의 가치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</p>	

[별표 3]

신고포상금 지급기준(제22조제2항 관련)

훼손자 배상금	포상금지급액	비고
10만원 미만	10,000원	
10만원 이상 ~ 50만원 미만	30,000원	
50만원 이상 ~ 100만원 미만	50,000원	
100만원 이상	70,000원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(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)</p> <p>① 관리청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업무를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·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, 「산림조합법」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산림조합 및 <u>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제22조에 따른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은 수목피해진단, 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「산림조합법」 제108조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야 한다.</p> <p>제19조(훼손자부담금 등) ① 관리청은 가로수 및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사고 또는 고의로 훼손한 자에게 산림자원법 제21조 및 「도로법」 제91조에 따라 복구에 필요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시장은 가로수의 하자 등을 고려하여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예치금으로 2년 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고, 훼손자는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예치금의 반환을 신청하며, 시장은 「안산시 재무회계규칙」 제80조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</p> <p>③ 훼손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8조(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제13조에 따른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은 「산림조합법」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, 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9에 따른 나무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제20조(훼손자의 배상책임 등) ① 가로</p>

<p>제20조(원인자부담금 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</p> <p>제21조(부담금의 강제징수) ① 관리청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관리청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제22조(신고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수 및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관리청은 배상금을 산정하여 훼손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에게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. 이 경우 시장은 가로수의 하자 등을 고려하여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예치금으로 2년 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고, 훼손자는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예치금의 반환을 신청하며, 시장은 「안산시 재무회계규칙」 제80조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배상 책임이 있는 자가 배상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.</p> <p>④ 그 밖에 배상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2와 같다.</p> <p>제19조(원인자 비용부담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원인자 비용부담----- ----- -----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제22조(신고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



4. 훼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

⑤ (생략)

4. 훼손자에게 배상금을 청구-----

⑤ (현행과 같음)

[별표 2]

훼손자원인자부담금 등의 산정기준  
(제19조, 제20조 관련)

훼손자부담금  
등

1. 별채, 수간절단 등으로 조정수 가치가 없는 경우  
: 부담금 = 도급공사비  
※ 원인자가 원상복구 하는 경우: 예치금 = 도급공사비
2.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치 치기의 경우  
: 부담금 = 수목비의 20% + 보호시설재료비 및 작업비  
※ 강도의 가치치기: 수관의 1/3 이상  
※ 작업비: 상용인부 활용시 인부임에 준함
3. 약도의 가치치기의 경우: 부담금 = 수목비의 10% + 작업비

원인자부담금  
등

1. 이식을 원하는 경우  
가.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: 예치금 = 도급공사비  
나.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: 부담금 = 도급공사비 + 이식비  
※ 이식비: 상용인부 활용시 인부임에 준함
2. 제거하는 경우  
가.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: 부담금 = 도급공사비  
나.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: 부담금 = 도급공사비 + 제거비  
※ 제거비: 상용인부 활용시 인부임에 준함

※ 비고

도급공사비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에 의한 원가계산(수목등 재료비포함) 적용하여 설계된 공사비  
수목비: 가격정보지(조달청) 가격적용,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시가 적용  
예치금납부방법: 금액이 500만원 이상 일때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  
예치금예치기간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하자책임담보 기간동안 예치  
예치금환불 등: 예치기간이 경과한 후 이식목에 대한 조정수로서의 가치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

[별표 2]

원인자 비용부담·훼손자 배상금 등의 산정기준  
(제19조, 제20조 관련)

원인자  
비용부담  
등

1. 이식을 원하는 경우  
가.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: 예치금 = 도급공사비  
나.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: 비용부담 = 도급공사비 + 이식비  
※ 이식비: 상용인부 활용시 인부임에 준함
2. 제거하는 경우  
가.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: 비용부담 = 도급공사비  
나.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: 비용부담 = 도급공사비 + 제거비  
※ 제거비: 상용인부 활용시 인부임에 준함

훼손자  
배상금  
등

1. 별채, 수간절단 등으로 조정수 가치가 없는 경우: 배상금 = 도급공사비  
※ 원인자가 원상복구 하는 경우: 예치금 = 도급공사비
2.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치 치기의 경우  
: 배상금 = 수목비의 20% + 보호시설재료비 및 작업비  
※ 강도의 가치치기: 수관의 1/3 이상  
※ 작업비: 상용인부 활용시 인부임에 준함
3. 약도의 가치치기의 경우: 배상금 = 수목비의 10% + 작업비

※ 비고

도급공사비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에 의한 원가계산(수목 등 재료비포함) 적용하여 설계된 공사비  
수목비: 가격정보지(조달청) 가격적용,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시가 적용  
예치금납부방법: 금액이 500만원 이상 일때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  
단, 훼손자가 교통사고로 훼손된 가로수를 원상복구한 경우 제20조 제2항의 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  
예치금예치기간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하자책임담보 기간동안 예치  
예치금환불 등: 예치기간이 경과한 후 이식목에 대한 조정수로서의 가치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

[별표 3]

신고포상금 지급기준(제22조제2항 관련)

훼손자 <u>부담금</u>	포상금지급액	비고
10만원 미만	10,000원	
10만원 이상~50만원 미만	30,000원	
50만원 이상~100만원 미만	50,000원	
100만원 이상	70,000원	

[별표 3]

신고포상금 지급기준(제22조제2항 관련)

훼손자 <u>배상금</u>	포상금지급액	비고
10만원 미만	10,000원	
10만원 이상~50만원 미만	30,000원	
50만원 이상~100만원 미만	50,000원	
100만원 이상	70,000원	